

상법 개정이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2025-2호)

7월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251)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공약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사항 중 **주주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를 명문화**함으로써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 및 의견 개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선임기준 강화, 감사위원회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를 적용으로 기존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주주들의 권리 강화 및 이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무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법 개정 추진 경과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습니다:

- 2024년 6월부터 다수의 상법 개정안 발의
 - 6월 5일 정준호 의원 등 11인: 충실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 발의
 - 6월 13일 박주민 의원 등 11인: 충실의무와 이사회 보수 관련 상법 개정안 발의
 - 6월 20일 강훈식 의원 등 12인: 충실의무, 전자투표 포함 상법 개정안 발의
 - 6월 27일 법무부: 전자주주총회 등 28개 조항 포함 상법 개정안 제출
 - 8월 9일 오기형의원·차규근의원 등 30인: 이사보수 승인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포함 상법 개정안 발의
 - 2024년 8월 이후: 김현정 의원, 박상일 의원, 민병덕 의원 등이 이사의 충실의무 포함한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2025년 2월 26일: 이사의 충실의무 및 전자주주총회 도입이 포함된 일련의 상법 개정안을 취합하여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마련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두 가지 핵심 내용만 포함)
- 2025년 3월 13일: 상법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
- 2025년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기업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우려 이유)
- 2025년 4월 17일: 재의결 시도 실패 (재석 299명 중 찬성 196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달)
-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실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 확정(6월 4일)

- 2025년 6월 5일: 이정문 의원 등 25인이 상법 개정안 재발의(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두 가지 핵심 내용만 포함)
- 2025년 6월 3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 표명
- 2025년 7월 2일: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한 12건의 상법 개정안 법사위 심사 및 의결
- 2025년 7월 3일: 법사위 의결 법안을 통합한 위원장 대안 본회의 통과

2. 상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사항은 ①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②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의무 선임비율 상향, ③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④전자주주총회 도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한 제38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전자주주총회와 관련한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의 개정규정과 제364조, 제368조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들 또한 이번 정부 주요 정책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재논의가 시작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제382조의3)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된 점입니다.

기존 제382조의3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사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장했습니다.

개정된 제382조의3에 따르면, 첫째 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둘째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 번째 조항으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전체를 향하게 되면, 단순히 회사에 이익이 되는지를 넘어서 소수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체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영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관계되는 거래나 행위에 있어서는 소수주주 관점에서도 불이익이 없거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사주 정책** 관련해서는 이사회가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구체적인 소각 계획을 공시하지 않으면,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회사의 분할, 계열사 간 합병·영업양수도 추진 시 “일반주주도 그 이익을 향유하는지” 여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 책임** 관련해서는 일반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 시 해당 이사에 대한 개인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립이사 제도 도입

개정안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독립이사는 사외이사 중에서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존 사외이사 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앞으로 합병, 분할, 자회사 상장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서 독립이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3%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연계되어, 기존에 각각 3%로 제한되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합산하여 3%로 제한됩니다. 현행법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 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부분을 변경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3%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2027년 정기주주총회부터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집니다.

소집지와 개최방식에 관한 제364조가 개정되어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하며,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제542조의14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했습니다. 주주는 소집지 직접 출석 또는 전자통신수단 출석(전자주주총회 출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더라도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전자주주총회 출석도 직접 출석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중 **현장병행형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현장 총회와 전자 참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운영 요건 관련해서는 주주가 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며, 필요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 개최 기록을 총회 종료 후 **5년간 보존**하고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로, 이는 전자주주총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¹⁾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23년 S&P1500 기업의 약 70%가 전자주주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²⁾

3. 실무 대응 방안

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사회의 형식적 구성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기능 중심으로 개선 (즉시 대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주주들은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결정이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소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사회를 형식이 아닌 기능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

독립성뿐 아니라 산업 전문성, 회계·법률 역량, 성별·세대 다양성 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들은 형식적인 기준을 넘어 각 이사가 실질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평가 및 보수 투명화 체계 구축

이사 보수는 평가와 연계하여 주주이익에 부합하게끔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사가 수령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주주들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지원 인프라 강화

사외이사가 이사회 안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외부 자문, 사전 자료 검토 기간 등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이사회 사무국, 이사회내 위원회 전담지원조직 등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독립이사 추가 선임 및 역할

의무선임비율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독립이사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장사들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1)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 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제211조(a)(2) 및 제222조(a)에 근거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독일의 경우 주식회사법 제118a조에 근거하여 전자주주총회 개최

2) Li, Yuanzhi, and David Yermack. Partisan Politics and Annual Shareholder Meeting Formats. No. w3265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4.

감사위원 3% 의결권 제한 대응

3% 의결권 제한 적용 확대에 따른 주주총회 표 대결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행동주의 펀드나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주주제안자 측에서 집중투표제로 감사위원 선임 주장을 하여 성공하거나, 회사가 상정한 상근감사 후보를 소액주주 등과 연합하여 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주총회의 내실화 (1년간 시스템 구축 및 준비)

전자주주총회가 실시되면, 일반주주들의 참석률과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주총회 집중개최, 개최지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제약 등으로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이 저조한 편이었으나,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고, 특히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어려운 주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전 질문 제출과 익명 참여가 가능해, 더 많은 주주들이 의견을 표현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전자주주총회 시행 대비 준비사항

주주총회 안건 설명 강화

일반주주의 참석률 증가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외에도 별도의 안건에 관한 추가 설명 자료를 마련함으로써, 참여가 증가한 주주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반대 의견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안건에 대해 회사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배당정책, 지배구조 설명, 이사 선임 기준까지 투자자 시선에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인프라 및 운영 체계 구축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선택 및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고, 총회 기록 보존 및 열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4. 시사점

이번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주주 친화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을 촉진할 것이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일반주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편 독립이사 도입 및 비중 확대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증대될 것이며, 감사위원 선임 시 특수관계자 3% 의결권 제한은 앞으로 일반주주의 높은 지지를 받을 독립성 높은 후보를 추천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호 예고

다음호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최준영 박사의 법률 연구소(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eas

기업지배구조 센터

Contact

은성욱 변호사

02-528-5305

sweun@yulchon.com

김건 변호사

02-528-5308

gkim@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02-528-5150

hyunjeong@yulchon.com

문성 변호사

02-528-5393

smun@yulchon.com

위춘재 변호사

02-528-5973

cjwee@yulchon.com

이호진 변호사

02-528-5960

hjinlee@yulchon.com

오용석 고문

02-528-6436

yongsukoh@yulchon.com

최준영 수석 전문위원

02-528-5806

junyoungchoi@yulchon.com

윤여훈 전문위원

02-528-5271

summeryoon@yulchon.com

정한욱 전문위원

02-528-6116

hwjung@yulchon.com

[참고] 개정 상법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364條(召集地)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 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第368條(總會의 決議方法과 議決權의 행사) ① (생략) ② 株主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그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 ① (현행과 동일) ② ----- -----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 ----- ③ (현행과 동일)
第382條의3(理事의 忠實義務) 理事는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忠實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생략)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외이사 및 제542조의 8제1항의 독립이사의----- ----- -----.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②(생략)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 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독립이사----- ----- -----.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 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① ----- -----3분의----- ----독립이사(제382조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독립이사는--. ② -----독립이사는----- ----- -----. 1. ~ 6. (현행과 같음) 7. -----독립이사로서의----- ----- ③ -----독립이사----- 독립이사----- ----- -----독립이사-----. ④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⑤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 ----- ----- -----독립이사-----.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제415조의2제2항의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제542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④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독립이사일--- ③ ----- ----독립이사가----- -----. ④ -----독립이사의----- ----독립이사의----- -----. 1.2.(현행과 같음)
1.2.(생략)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⑥③(생략)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⑥③(현행과 같음) ④ ----- ----- -----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 ----- -----.
⑤·⑥(생략)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⑤·⑥(현행과 같음) ⑦ -----<후단 삭제>
⑧(생략)	⑧(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 규모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항부터 제5항에항까지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② (생략)	第635條(過怠料에 處할 行爲)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1. 제54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 독립이사 ----- ----
2. 제542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 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2. ----- 독립이사 ----- ----- 독립이사 ----- 독립이사 ----- -----
3. 제542조의8제5항에 따라 사외이사 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 ----- 독립이사를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